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시행 2018.10.1] [산림청고시 제2018-00호, 2018.0.0, 제정]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이란 한국 산림청이 원산국별로 목재합법성에 관한 정보 조사를 위해 원산국 정부에 요청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3조(대상상품의 분류체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원목 또는 목재제품의 세계 공용 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Code)는 다음과 같다.

1. 원목(HS4403)
2. 제재목(HS4407)
3. 방부목재(HS4407)
4. 난연목재(HS4407)
5. 집성재(HS4407)
6. 합판(HS4412)
7. 목재펠릿(HS4401-31)

제4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와 상호 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과의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한국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에 해당서류의 발급기관 및 서식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제5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00호, 2018.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별 PEFC 상호인정 등록 인증제도

(2017. 9월 기준)

구분	국가	산림인증제도	FM(ha)	CoC(건)
1	아르헨티나	Argentine Forest Certification System(CERFOAR)	22,524	10
2	브라질	Brazilian Forest Certification Programme (CERFLOR)	3,072,628	65
3	칠레	Chile Forest Certification Corporation(CERTFOR)	1,908,712	63
4	캐나다	PEFC Canada, Sua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130,937,328	188
5	미국	PEFC United States: American Tree Farm System (ATFS),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33,502,630	270
6	우루과이	Sociedad de Productores Forestales del Uruguay	619,168	3
7	호주	Australian Forestry Standard	23,832,280	196
8	중국	Chin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CFCC)	5,709,026	289
9	일본	Sustainable Green Ecosystem Council(SGEC)	679,129	700
10	인도네시아	Indonesian Forestry Certification Cooperation(IFCC)	3,491,040	32
11	말레이시아	Malaysian Timber Certification Council (MTCC)	4,119,249	359
12	뉴질랜드	New Zealand Forest Certification Association Inc.(NZFCA)	434,185	28
13	오스트리아	PEFC Austria	3,081,518	470
14	벨라루스	Belarusian Association of Forest Certification	8,710,234	9
15	벨기에	PEFC Belgium	299,500	303
16	체코	PEFC CzechRepublic	1,811,407	212
17	덴마크	PEFC Denmark	264,411	100
18	에스토니아	Estonian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1,174,511	71
19	핀란드	PEFC Finland	17,660,520	232
20	프랑스	PEFC France	8,211,435	2,033
21	독일	PEFC Germany	7,398,828	1,708
22	헝가리*	Hungarian Forest Certification Non-profit Ltd.	-	21
23	아일랜드	PEFC Ireland	376,108	41
24	이탈리아	PEFC Italy	828,952	711
25	라트비아	PEFC Latvia	1,700,889	49
26	룩셈부르크	PEFC Luxembourg	34,195	18
27	네덜란드	PEFC Netherlands	-	454
28	노르웨이	PEFC Norway	7,380,750	75
29	폴란드	PEFC Poland	7,252,197	172
30	포르투갈	PEFC Portugal	256,369	133
31	러시아	PEFC Russia	12,875,382	30
32	슬로바키아	Slovak Forest Certification Association	1,230,971	79
33	슬로베니아	Institute for Forest Certification	49,204	42
34	스페인	PEFC Spain	2,108,257	880
35	스웨덴	PEFC Sweden	11,549,700	212
36	영국	PEFC UK	1,409,761	1,180
37	스위스	PEFC Switzerland	208,949	51
38	루마니아*	PEFC Romania	-	24
39	가봉*	PEFC Gabon	-	-

* 2016년 상호인정 등록국가는 FM면적 적용 안됨

※ 출처 : www.pefc.org (PEFC Global Statistics, SFM & CoC Certification, Sep 2017)

[별지 제1호서식]

목재합법성 확인서

■ 수급자 :

품 명	단 위	수 량	수 종	원산지
ex) 합판	㎥	50	라디에타파인(%)	뉴질랜드
			유칼립투스(%)	인도네시아
			포플러(%)	중국

※ 원자재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원산국 모두를 기재하며, 수종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모든 수종을 기재함

상기 내용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수급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위 물품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며, 한국 정부에서 목재합법성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협조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

대한민국의 불법벌채목재 교역금지 관련 규정

대한민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불법 벌채된 목재와 목재제품의 대한민국 반입 및 대한민국 내 가공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상기 법령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이용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 가이드라인은 합법성 평가를 위한 수입신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사항

· <국가명>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국가명>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 <국가명>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국가명>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 <국가명>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 <국가명>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국제 통용 인증 관련

· <국가명>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 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 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국가명>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 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명>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 <국가명>의 합법성 증명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기타

· <국가명>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국가명>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붙임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 허가서, 수출 허가서,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